

[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편 드 명	BNK삼성전자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직판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2년 03월 18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요약정보]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요약정보]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온라인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용어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u>대차대조표</u>	- <u>재무상태표</u>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온라인직접판매(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 Class J-e, - Class J-Pe - Class J-P2e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 Class J-e, - Class J-Pe - Class J-P2e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2.03.18: 직판 클래스 신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2.02.28 기준으로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직판 클래스 신설	가. (생략) 나. 종류형 구조 <신설>	가. (현행과 동일) 나. 종류형 구조 - J-e, J-Pe, J-P2e 추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투자 대상 ① (생략)	가. 투자 대상 ① (현행과 동일)

	<p>②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③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u>사채</u>,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⑪ (생략)</p> <p>나. 투자 제한</p> <p>① (생략)</p> <p>② 이 투자신탁 --- (생략) --- 투자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p>	<p>②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u>사채</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상기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해당 자산이 3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p> <p>③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u>사채</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p> <p>④ ~ ⑪ (현행과 동일)</p> <p>나. 투자 제한</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 투자신탁 --- (생략) --- 투자할 수 있다.</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생략)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p>
--	--	--

		<p>한다) 또는 어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에 따른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한국주택금융공사</u> 또는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u>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u>이하생략</u>)---</p> <p>다. (생략)</p> <p>③ ~ ⑨ (생략)</p>	<p>한다) 또는 어음 또는 <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u> 또는 <u>주택저당증권</u>(<u>한국주택금융공사법</u>에 따른 <u>한국주택금융공사</u> 또는 <u>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u>이 지급을 보증한 <u>주택저당증권</u>을 말한다)</p> <p>---(<u>이하 현행과 동일</u>)---</p> <p>다. (<u>현행과 동일</u>)</p> <p>③ ~ ⑨ (<u>현행과 동일</u>)</p>
<p>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p>	<p>직판 클래스 신설</p>	<p>가. 매입</p> <p>(1) (생략)</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u><신설></u></p> <p>(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다) (생략)</p> <p>(4) (생략)</p> <p>나. 환매</p> <p>(1) (생략)</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p> <p>⇒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가. 매입</p> <p>(1) (<u>현행과 동일</u>)</p> <p>(2) 종류별 가입자격</p> <p>- J-e, J-Pe, J-P2e 추가</p> <p>(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p> <p>⇒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다) (<u>현행과 동일</u>)</p> <p>(4) (<u>현행과 동일</u>)</p> <p>나. 환매</p> <p>(1) (<u>현행과 동일</u>)</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p> <p>⇒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3영업일(D+2)</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4영업일(D+3)</u>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됩니다. (3) ~ (8) (생략)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영업일(D+2)</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됩니다. (3) ~ (8) (현행과 동일)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생략)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상</u>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나. (현행과 동일)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직판 클래스 신설	<신설>	- <u>J-e, J-Pe, J-P2e</u> 추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직판 클래스 신설 및 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1)~(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 C-Pe 및 S-P 가입자</u>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u>Class C-P2, C-P2e 및 S-P2 가입자</u>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1)~(3) (현행과 동일)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Class C-P, C-Pe, S-P 및 J-Pe 가입자</u>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u>Class C-P2, C-P2e, S-P2 및 J-P2e 가입자</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의무해지 (생략) -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 의무해지 (생략) -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가. 정기보고서 (1) (생략)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한국예탁결제원</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u>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생략)	가. 정기보고서 (1) (현행과 동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u>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끝.